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26 선고 2023가단507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소송대리인 E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 피고와 F 사이에 2021. 3. 15. 체결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취소한다.
- 피고는 F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F는 주식회사 G와 사이에 2009. 6. 26. 대출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원금을 2,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H에게 F에 대한 위 대출계약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7. 9. 11. 주식회사 H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아 F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H로부터 양수받은 위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F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차전13601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21. 6. 23. “F는 원고에게 13,602,403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2,000,000원에 대하여 2021. 6.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48.54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1. 7. 31.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을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하고, 원고의 F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

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E, J, F를 자녀로 두었고, 2021. 3. 15. 사망하였다.

다. 피고, E, J, F는 2021. 3. 15.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21.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F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이 유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 중부세무서(남대문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F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받게 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바, 이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F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1988년부터 살던 집으로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명의로 하기 위해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것이다. F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재산을 소유·관리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피고의 보호가 필요하고, 피고는 F의 채무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피고에게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F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F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부부가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1987. 12. 3. 매수한 부동산이다. 망인은 1933년생이고 피고는 1939년생으로, 피고는 망인이 2021. 3. 15. 사망할 때까지 매우 오랜 기간 망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오면서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다.

③ F를 비롯한 피고의 자녀들 3명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9의 상속분을 가진 F 때문에 피고의 나머지 자녀들까지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인식하고 노모인 피고의 여생동안 안정적인 주거생활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승혜

별지